

## 안양시 통·반 설치 조례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정 1976. 4. 1. 조례 제 175호   | 개정 1989. 12. 28. 조례 제1002호   |
| 개정 1976. 4. 13. 조례 제 176호  | 개정 1990. 5. 10. 조례 제1028호    |
| 개정 1977. 2. 7. 조례 제 209호   | 개정 1990. 8. 28. 조례 제1043호    |
| 개정 1977. 2. 28. 조례 제 219호  | 개정 1992. 5. 7. 조례 제1162호     |
| 개정 1978. 1. 16. 조례 제 276호  | 개정 1993. 1. 14. 조례 제1246호    |
| 개정 1978. 1. 24. 조례 제 281호  | 개정 1993. 5. 20. 조례 제1259호    |
| 개정 1978. 4. 20. 조례 제 291호  | 개정 1994. 6. 28. 조례 제1304호    |
| 개정 1978. 1. 8. 조례 제 312호   | 개정 1994. 12. 27. 조례 제1339호   |
| 개정 1979. 3. 27. 조례 제 330호  | 개정 1995. 12. 28. 조례 제1397호   |
| 개정 1979. 4. 28. 조례 제 341호  | 개정 1996. 7. 18. 조례 제1467호    |
| 개정 1979. 11. 20. 조례 제 354호 | 개정 1997. 10. 23. 조례 제1557호   |
| 개정 1979. 3. 18. 조례 제 370호  | 개정 2000. 1. 10. 조례 제1677호    |
| 개정 1980. 7. 3. 조례 제 391호   | 개정 2000. 12. 29. 조례 제1718호   |
| 개정 1980. 8. 5. 조례 제 414호   | 개정 2001. 7. 28. 조례 제1747호    |
| 개정 1980. 1. 27. 조례 제 478호  | 개정 2002. 2. 1. 조례 제1765호     |
| 개정 1982. 8. 5. 조례 제 555호   | 개정 2002. 7. 25. 조례 제1786호    |
| 개정 1982. 11. 9. 조례 제 564호  | 개정 2003. 3. 31. 조례 제1810호    |
| 개정 1983. 12. 31. 조례 제 569호 | 개정 2003. 10. 16. 조례 제1840호   |
| 개정 1982. 8. 19. 조례 제 598호  | 개정 2005. 1. 6. 조례 제1905호     |
| 개정 1983. 9. 14. 조례 제 601호  | 개정 2006. 1. 10. 조례 제1979호    |
| 개정 1983. 2. 9. 조례 제 624호   | 전부개정 2009. 1. 9. 조례 제2141호   |
| 개정 1984. 2. 4. 조례 제 632호   | 일부개정 2011. 4. 1. 조례 제2314호   |
| 개정 1984. 3. 7. 조례 제 716호   | 일부개정 2012. 5. 16. 조례 제2394호  |
| 개정 1985. 5. 31. 조례 제 722호  | (제명개정)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정 1985. 11. 11. 조례 제 740호 | 일부개정 2014. 11. 14. 조례 제2575호 |
| 개정 1985. 12. 31. 조례 제 754호 | 일부개정 2015. 6. 24. 조례 제2634호  |
| 개정 1986. 11. 10. 조례 제 785호 | 일부개정 2018. 5. 3. 조례 제2946호   |
| 개정 1986. 12. 12. 조례 제 786호 | (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       |
| 개정 1986. 12. 31. 조례 제 793호 |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)             |
| 개정 1987. 9. 7. 조례 제 834호   | 일부개정 2018. 7. 12. 조례 제2959호  |
| 개정 1988. 2. 15. 조례 제 845호  | 일부개정 2021. 12. 30. 조례 제3379호 |
| 개정 1988. 4. 30. 조례 제 855호  | (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          |
| 개정 1989. 6. 21. 조례 제 961호  |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)           |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5. 16., 2021. 12. 30.>

제2조(하부조직)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, 통에 반을 둔다.

제3조(획정기준) 통은 10개반 이내로, 반은 8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3.>

제4조(명칭 및 관할구역)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

정 2015. 6. 24.>

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.

② 통·반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5. 16.>

1. 해당 통·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
3. 삭제 <2012. 5. 16.>

③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,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따라 각각 동장이 위촉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.

④ 통·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,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통장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 통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16., 단서신설 2014. 11. 14.>

⑤ 동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통장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7. 12.>

제6조(통·반장의 위촉 해제)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·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1. 14.>

1. 신체·정신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
2.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
3. 임기 중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할 때
4. 통·반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때
5. 그 밖에 통·반장으로서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

[제목개정 2014. 11. 14.]

제7조(임무) 통장은 동장의, 반장은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4. 11. 14.>

1. 지역주민 생활지원
2.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
3. 각종 사실 확인
4. 통·반주민의 비상연락훈련

5.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

6.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(전시에 한함)

7. 전시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(전시에 한함)

8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매월 25일은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되,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유지) ① 통·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 11. 14.>

② 통·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 11. 14.>

제10조(편의제공) 통·반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12.>

제11조(예산의 지원)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,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2. 5. 16. >

②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월 근무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,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한다. <신설 2014. 11. 14.>

③ 통·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일(설·추석) 현재 위촉 중인 통·반장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12. 5. 16., 2014. 11. 14., 2018. 7. 12.>

④ 시장은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4. 1., 개정 2012. 5. 16., 2018. 7. 12.>

1.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

2. 교육, 워크숍 지원

3. 그 밖에 시장이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18. 7. 12.]

[제11조제3항 적용일 <2012. 1. 1>]

제12조(금품징수의 금지) 통·반장은 통·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.

제13조(통·반운영 유공자 포상 등) 시장은 통·반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통·반장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 11. 14.]

부칙 <2009. 1. 9. 조례 제2141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통의 통장임기는 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2011. 4. 1. 조례 제2314호>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5. 16. 조례 제239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1. 14. 조례 제257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6. 24. 조례 제263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경과조치)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18. 5. 3. 조례 제2946호,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12. 조례 제295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30. 조례 제3379호,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삭제 <2015. 6. 24.>

